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 산정〉
■ 박해철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2325호)

2025. 11.
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 산정	2

I. 제안경위

2025년 8월 22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, 임진강,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.

이에 남북한 공유하천의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하천유지유량의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,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천환경 보전, 홍수·가뭄 등 재해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51조제1항).

Ⅲ. 검토의견

1.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 하천유지유량 산정

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유지유량¹⁾ 산정 시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1조 후단 신설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1조(하천유지유량)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·공업·농업·환경개선·발전·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“하천유지유량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51조(하천유지유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하천유지유량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1) 생활·공업·농업·환경개선·발전·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

현행법²⁾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³⁾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“하천유지유량”이라 함)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고, 하천관리청⁴⁾은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또한 「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」⁵⁾에 따라 하천유지유량은 국가 및 지역의 물 관련 계획 수립 주기⁶⁾를 감안하여 5년 주기로 검토하고, 필요 시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①유역개황, ②하천유황, ③하도 상황, ④하천 유입량 및 하천수사용량, ⑤하천 자연 및 사회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음.

2) **법 제51조(하천유지유량)**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·공업·농업·환경개선·발전·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(이하 “하천유지유량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(이하 “기준지점”이라 한다)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.

③하천관리청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의 선정 및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3)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수질보전·하천생태계보호·하천경관보전·염수침입방지 등을 위한 필요유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.

4) **법 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4. “하천관리청”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·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법 제8조(하천관리청) ①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.

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·도지사가 관리한다.

5)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-165호, 2025. 10. 1, 일부개정

6) 국가물관리기본계획, 유역물관리기본계획,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, 지역수자원관리계획,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, 특정도시하천침수피해방지기본계획, 하천기본계획 등이 10년 주기로 수립되고, 5년마다 재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도 5년마다 검토하여 재산정하도록 규정

[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고려 사항]

「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」 [별표]	
1. 유역개황	해당 유역의 지형, 지질, 인문사회, 경제, 토지이용, 용수 수급, 유역개발 현황 및 계획, 기타 특성 등
2. 하천유황	수위 또는 유량 관측지점, 지점별 유황, 기타 유량 특성 등
3. 하도 상황	주변지형, 하상재료, 여울·웅덩이(沼)의 분포, 하천횡단 주요 구조물, 수중보 및 수문의 유무, 하굿둑 유무 및 기능, 기타 구간별 하도특성 등
4. 하천유입량 및 하천수 사용량	지류 유입량, 취수지점 및 하천수사용량, 하천수사용량의 시공간 분포, 방류수 또는 회귀수, 기타 해당하천의 용수사용량과 허가량 등
5. 하천 자연 및 사회환경	하천 수질현황과 수질보전 대책 및 사업, 하천구역에서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법정 보호종 또는 서식하는 생물 지표종, 관광지 및 명승지 등 문화보전, 지하수 이용, 기타 해당 하천의 자연과 사회환경 특성

그런데 임진강, 북한강 등 남북한이 함께 공유하는 하천(이하 “남북한 공유하천”이라 함)⁷⁾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방류되는 유량이 하천유지유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⁸⁾,

7) 임진강은 유역면적의 63%, 북한강은 23%가 북한에 속하며, 북한은 임진강 유역 11개소 및 북한강 유역 13개소에 댐을 건설하였음(남한은 임진강 유역 2개소, 북한강 유역 7개소)

[남북한 공유하천 현황]

구분	임진강			북한강		
	전체	남한	북한	전체	남한	북한
유역면적 [km ²]	8,118 (100.0%)	3,009 (37.1%)	5,109 (62.9%)	10,124 (100.0%)	7,787 (76.9%)	2,337 (23.1%)
유로연장 [km]	254.6 (100.0%)	92.0 (36.1%)	162.6 (63.9%)	291.3 (100.0%)	158.8 (54.5%)	132.5 (45.5%)

8) 북한의 임진강 황강댐(저수용량 3억 m³)은 무단 방류 시 30여 분 만에 남한 군남댐(저수용량 7,160만 m³)에 도달. 2009년 북한의 무단 방류로 야영객 6명 사망사고 발생한 바 있으며, 최근 여름철에 무단방류가 반복되어 임진강 하류인 연천·파주 등 접경지역에 홍수 위험이 커지고 있음 (“북한 황강댐 또 예고없이 방류…올 여름 잇단 방류로 긴장”, 중앙일보, 2025. 9. 8)

현행법령 상 “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남북한 공유하천의 유입유량을 고려해야 한다”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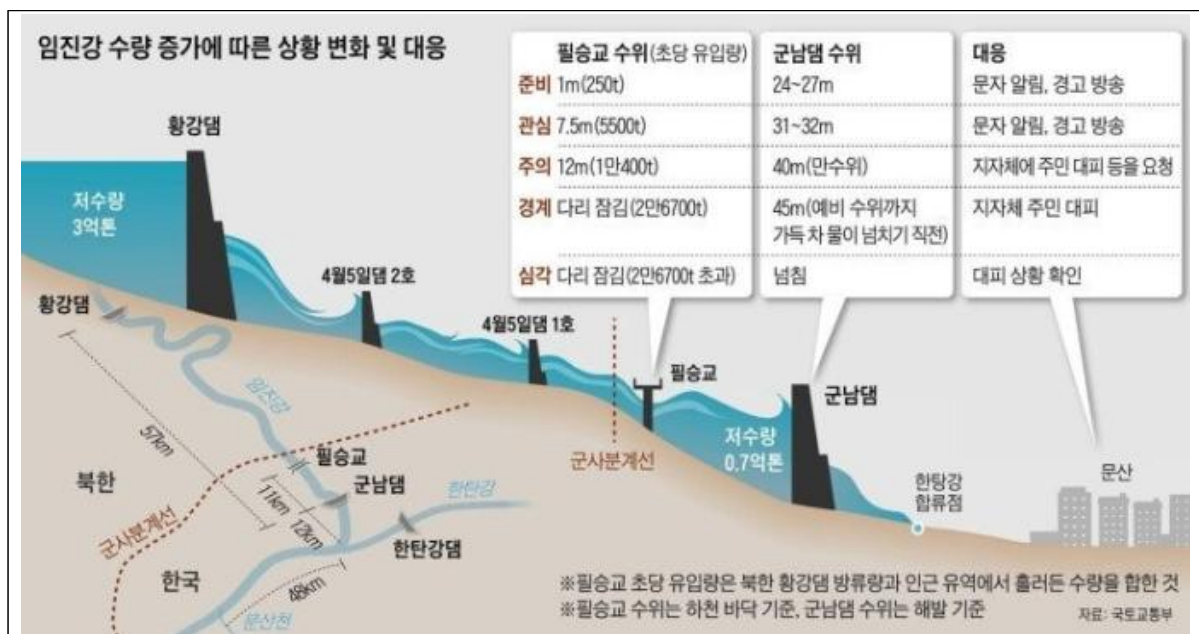
이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하천유지유량 산정 시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

이를 통해 하천유지유량 산정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, 홍수·가뭄 등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임⁹⁾.

문 의 처

02)6788-5547

[북한 황강댐과 남한 군남댐 위치도]



- 9)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무적으로는 남북한 공유하천 유역 내 5개의 수위관측소*를 설치하고, 하천유지유량 산정을 위한 유량 검토 시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의 유량을 반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, 관련 내용을 「하천법」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임.

* 연천군(필승교), 철원군(대마리), 철원군(삼합교), 철원군(암정교), 인제군(반월촌교)